

이사회 의 소집 통지 시 회의 의 목적 사항 기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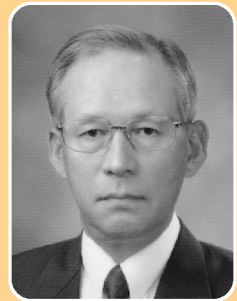
Q 당 회사는 상법 제390조 제2항에 의거 1주간의 기간을 두고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소집통지시에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의안도 통지 하였습니다. 회일이 3일 뒤입니다. 그런데 통지한 의안에 추가하여 한가지 의안을 당일 회의에 더 상정하려 합니다. 추가하여 상정한 의안을 결의한 때에 법원으로부터 그 효력을 부정당할 염려는 없는지요.

A 1.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시에는 상법상 반드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 제2항). 따라서 주주총회가 목적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상정하여 결의하면, 그 결의는 하자있는 결의로서 효력을 부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사회 의 소집 통지시에는 상법상 반드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관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 제390조, 상장회사 표준정관 제37조, 상장회사 표준이사회규정 제9조). 따라서 이사회 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의결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받을 염려가 있다던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결의의 효력을 부정당할 염려가 없습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2. 혹시 귀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규정 중에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반드시 그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을 경우를 생각하여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칙으로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전계판결). 하지만, 그럴더라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의안을 당일 상정하여 결의하더라도 그 하자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그 결의의 효력을 부정 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사는 회사와의 사이에서 이사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하고 그 직에 취임한 사람입니다. 그 직무 중에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보다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와의 사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사는 이사회 의 소집통지를 받으면 스스로 관련 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런 지위에 있는 이사가 이사회 의 소집통고를 받고서 회의의 목적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아니하고 뒤에 그 하자를 들어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면이 있습니다.

3. 귀 회사로서는 뒤에 누군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자가 있는지 모르므로 이제라도 서둘러 문서, Fax, e-mail, 문자 message 등으로 이사들에게 추가하는 의안을 통지하십시오.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효력을 부정당할 가능성을 한층 낮출 수 있습니다.



김 교 창

본회 상담역

법무법인 정률

고문변호사

Tel. 2183-5601



김성남

본회 상담역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공인회계사

Tel. 3787-6520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한 공시의 개정사항

최근 확정된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한 공시의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7월 20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서(K-IFRS)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 중 금융자산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0년 7월 IASB가 발표한 IFRS 7의 개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행기준서는 금융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필요한 공시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기준서에 의하면 금융자산이 장부에서 제거되었더라도 해당 자산에 대한 매도풋옵션, 매입콜옵션 또는 유가증권 대여계약 등을 통해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공시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변경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기준서는 2011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K-IFRS 제1107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양도시 전체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의 공시

K-IFRS 제1039호에 의하면 금융자산을 법적으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자가 해당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현행기준서가 규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외에 다음 두 가지를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간 관계의 성격에 관한 기술
- 관련 부채의 거래 상대방이 양도자산에 대한 소구권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관련부채의 공정가치 및 순포지션

2. 금융자산 양도시 전체가 제거된 경우의 공시

현행기준서에 의하면 금융자산 양도시 전체가 제거된 경우 별도의 공시가 필요하지 않지만 개정기준서에 의하면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더라도 양도자가 해당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 지속적 관여를 나타내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 지속적 관여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최대노출금액

또한, 금융자산의 양도가 보고기간말에 집중된 경우와 같이 양도로부터의 대가총액이 보고기간에 균등하게 발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큰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와 대가총액 및 그로 인해 인식된 손익을 공시하여 재무제표 이용자가 재무상황 및 영업손익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영자의 인위적 노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경정된 경우의 중간예납

Q 당 법인은 2010회계연도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매출액이 귀 속사업년도 오인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12월말 법인의 경우 6월말)이후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 종료일(12월말 법인의 경우 8월말)이전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경정청구하여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기준에 의해 신고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은 경정 전 혹은 경정 후 세액 중 어느 것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A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당해 사업연도의 가결산 결과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 질의의 요지는 이 중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확정하는 기준시점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12월말 법인의 경우 6월말)인지 아니면 중간예납 신고납부기간 종료일(12월말 법인의 경우 8월말)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종료된 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 경정되는 경우에 중간예납 기간의 종료로 이미 성립, 확정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조세의 중간예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평준화를, 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의 조기확보와 조세회피의 방지를 각각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위와 같은 감액경정의 경우에 중간예납세액의 감액을 인정하더라도 중간예납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법인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신고자의 경정청구에 따라 감액 경정되는 경우에 그 감액경정의 효력은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가 있었을 당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③ 비록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시 자동으로 성립, 확정된다고 하나, 이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소급적으로 감액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의 확정상태도 깨어지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종료된 후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감액 경정되는 경우에는 일단 성립, 확정되어 있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중 감액분에 상응하는 부분도 별도의 감액경정절차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중간예납세액은 경정 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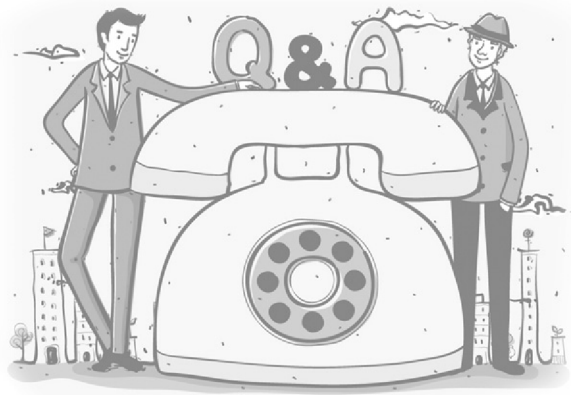
정 창 모

본회 상담역
삼덕회계법인 전무이사
공인회계사
Tel. 512-3870

또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정 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2003두1899, 2003.04.25. 참조)

본 상담내용은 본회 상담역의 개인의견이며, 소속법인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이달의 자료실

제 목	담당파트	목차별 자료
「반기보고서 및 IFRS 재무제표 작성 유의사항 설명회」 자료	공시제도	세미나자료
2011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정관기재유형 조사	법제조사	통계자료
상장협 ISSUE PAPER Vol. 2 (2011. 7) 발간	·	기타자료
전자단기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2011. 7. 14 공포)	·	최신 법규자료

※ 이달의 자료실은 본회 홈페이지(www.klca.or.kr) 「자료실」 및 「회원Plaza」에 등록된 자료로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파트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783-6501)